

부속서 |

기본농산물 관련 스위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 계획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10	번식용의 것		
0101101000	말	8	6.4
0101109000	기타	8	6.4
010190	기타		
01019010	말		
0101901010	경주말	8	0
0101901090	기타	8	4
0101909000	기타	8	4
0102	소		
010210	1. 종우		
0102101000	젖소	89.1	0
0102102000	육우	89.1	0
0102109000	기타	89.1	0
010290	2. 기타		
0102909000	기타	0	0
0104	면양과 산양		
0104100000	면양	8	4
010420	산양		
0104201000	유용산양	8	6.4
0104209000	기타	8	6.4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021099	기타		
02109910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991090	기타	22.5	15.8
02109990	기타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고기	22.5	15.8
0210999090	기타	22.5	15.8
0406	치즈와 커드		
0406900000	기타 치즈	36	B4*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90	2. 기타		
05069010	가. 뼈		
0506901090	(3) 기타	3	0
0506909000	다. 기타	3	0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0000	1. 소의 정액	0	0
05119	2. 기타		
051199	나. 기타		
0511991000	(1) 동물의 피	8	6.4
05119920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	(3) 수정란		
0511993090	기타	0	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2	2. 치커리		
07052100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8	6.4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0705290000	기타	8	6.4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3	2.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31	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712311000	(1) 양송이 버섯	30	27
0712319000	(2) 기타	30% 또는 1,218won/ kg중 큰 것	27% 또는 1,096won/ kg중 큰 것
0712330000	다. 젤리균류(트레멜라종)	30% 또는 1,218won/ kg중 큰 것	27% 또는 1,096won/ kg중 큰 것
071239	라. 기타		
07123910	(1) 버섯		
0712391030	(다) 영지버섯	30% 또는 842won/kg 중 큰 것	27% 또는 758won/kg 중 큰 것
0712391040	(라) 느타리버섯	30	27
0712391050	(마) 팽이버섯	30	27
0712392000	(2) 송로	27	24.3
071290	3.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20	나. 기타 채소		
0712902020	(2) 무	30	24
0712902030	(3) 파	30% 또는 1,159won/ kg중 큰 것	24% 또는 927won/kg 중 큰 것
0712902040	(4) 당근	30% 또는 864won/kg 중 큰 것	24% 또는 691won/kg 중 큰 것
0712902050	(5) 호박	30	24
0712902060	(6) 양배추	30	24
071290209	(9) 기타		
0712902093	(다) 감자	27	24.3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90	기타		
0811909000	기타	30	27
1001	밀과 메슬린		
100190	2. 기타		
10019090	나. 기타		
1001909020	사료용	1.8	0
1001909030	제분용	1.8	0
1001909090	기타	1.8	0
100200	호밀		
1002009000	기타	3	0
100400	귀리		
1004009000	기타	3	0
100700	수수		
1007009000	기타	3	0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1001000	밀가루	4.2	3.8
1101002000	메슬린가루	5	4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1102100000	호밀가루	5	4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4.5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8	6.4
110620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1106201000	첨뿌리의 것	8	6.4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삼)		
130110	1. 락		
1301101000	가. 셀락	3	0
1301109000	나. 기타	3	0
1301200000	2. 아라비아 검	3	0
130190	3. 기타		
1301901000	가. 올레오레진	3	0
1301909000	나. 기타	3	0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1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9	나. 기타		
15121910	(1) 정제유		
1512191010	(가) 해바라기씨유	10	8
15121990	(2) 기타		
1512199010	(가) 해바라기씨유	10	8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9	2. 기타		
151499	나. 기타		
15149910	정제유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30	27
1514991020	겨자유	30	27
1514999000	기타	30	27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10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6109000	기타	8	4
1518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6.4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8	7.2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17011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0112	사탕무당		
170112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2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1.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1703101000	주정제조용의 것	3	0
1703109000	기타	3	0
170390	2. 기타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17039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0
1703909000	기타	3	0
180200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2001000	코코아두의 각과 피	8	0
1802009000	기타	8	0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드레인한 것,설탕을 입히거나설탕에 절인 것)		
2006001000	1. 마롱 글라세	30	27
2006003000	3. 생강	30	24
2006004000	4. 연뿌리	30	24
2006005000	5. 완두(파심 새티빔)	20	18
20060060	6.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006006010	탈각한 콩	20	18
2006006090	기타	20	18
2006007000	7. 아스파라거스	20	16
20060090	9. 기타		
2006009030	다. 기타 채소의 것	20	16
2006009090	라. 기타	30	24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1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192000	코코넛	45	22.5
2008199000	기타	45	27
2008200000	파인애플	45	36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3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20093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311000	레몬쥬스	50	30
2009312000	라임쥬스	50	30
2009319000	기타	54	32.4
200939	기타		
2009391000	레몬쥬스	50	30
2009392000	라임쥬스	50	30
2009399000	기타	54	32.4
20097	7. 사과쥬스		
2009790000	기타	45	40.5
200980	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20098010	가. 과실쥬스		
2009801010	복숭아쥬스	50	45
2009801020	딸기 주스	50	30
2009801090	기타	50	40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2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20421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B4
2204219000	기타	15	B4
220429	기타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B4
2204292000	흰 포도주	15	B4
2204299000	기타	15	B4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220600	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10	과실발효주		
2206001010	사과주	15	B4
2206001090	기타	15	B4
22060020	곡물발효주		
2206002090	기타	15	B4
22060090	기타		
2206009010	와인콜러(제2009호 또는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말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B4
2206009090	기타	15	B4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 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10	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71090	나. 기타		
2207109090	기타	30	B4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6700000	7. 옥수수 배(胚)의 것	5	0
230690	8. 기타		
2306902000	들깨의 것	5	0
2306909000	기타	5	0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8001000	도토리	5	4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4
2308003000	면실피	5	0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000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5	0
230990	기타		
23099010	배합사료		
2309901010	양돈용의 것	4.2	0
2309901020	양계용의 것	4.2	0
2309901030	어류용의 것	5	0
2309901040	축우용의 것	4.2	0
230990109	기타		
2309901091	대용유의 것	71	56.8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	보조사료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한 것은 제외한다)	50.6	40.5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한 것	50.6	40.5
230990209	기타		
2309902091	'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40.5
23099030	사료첨가제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한 것	5	0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00	기타	50.6	40.5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20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또는 유형)
2402209000	기타	40	36

* 연간 관세 쿼터 :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45톤, 6년째부터는 60톤
(이 부속서의 부록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